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소희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5607

발의연월일: 2024. 11. 15.

발 의 자: 김소희·김성원·이성권

김예지 · 김선교 · 우재준

서명옥 · 서일준 · 박형수

김정재 · 조경태 · 박수민

강민국 • 주호영 • 김상훈

장동혁 · 정연욱 · 이헌승

권영세 · 엄태영 의원

(209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업의 투자 촉진을 위해 시설투자 금액의 100분의 1(중견기업은 100분의 5, 중소기업은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고 있음. 그리고 신성장·원천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 투자와 국가전략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 투자의 경우 공제율을 상향하여 적용하고 있음. 하지만,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시설투자의 경우 별도의 공제율 상향을 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산업재해로 인한 재해자수 및 사망자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근본적인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노후시설 교체 및 안전 장치 보강 등 산업재해 예방시설에 대한 기업의 적극적인 투자 확대 를 유도할 필요가 있음. 하지만, 기업의 재정상 여력의 한계로 인해 산업재해 예방시설에 대한 투자 확대에 한계가 있음. 이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업의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한시적으로 상향 하여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투자 확대를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 1항제2호가목3) 신설). 법률 제 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제2호가목에 3)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신성장사업화시설"을 "신성장사업화시설, 산업재해예방시설"로 한 다.

3)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하 이 조에서 "산업재해예방시설"이라 한다)에 2030년 12월 31일까지 투자하는 경우: 100분의 3(중견기업은 100분의 6, 중소기업은 100분의 12)에 상당하는 금액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4조(통합투자세액공제) ① 대	제24조(통합투자세액공제) ①
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이	
제1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	
는 자산에 투자(중고품 및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	
한 투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경우에는 제	
2호 각 목에 따른 기본공제 금	
액과 추가공제 금액을 합한 금	
액을 해당 투자가 이루어지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20	
23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	
연도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제3	
호 각 목에 따른 기본공제 금	
액과 추가공제 금액을 합한 금	
액을 공제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공제금액	2
가. 기본공제 금액: 해당 과	가
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의 1	
00분의 1(중견기업은 100	

분의 5, 중소기업은 100분 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 다.

1) • 2) (생략)

<신 설>

나. (생 략)

- ② ~ ④ (생 략)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 정을 적용할 때 투자금액의 계 산방법, 해당 과세연도의 직전 3년간 연 평균 투자금액의 계 산방법, 신성장사업화시설 및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의 판 정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

1) • 2) (현행과 같음)
3)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시설(이하
이 조에서 "산업재해예
<u>방시설"이라 한다)에 203</u>
0년 12월 31일까지 투자
하는 경우: 100분의 3(중
<u> 견기업은 100분의 6, 중</u>
소기업은 100분의 12)에
상당하는 금액
나.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5
신성장사업화시설, 산
업재해예방시설

공). O	네티커커스크	기치이
앗는	대통령령으로	성안나.
